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승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3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 강승규·김미애·권성동

박덕흠 • 김소희 • 강선영

조배숙 • 백종헌 • 박준태

나경원 • 고동진 • 곽규택

장동혁 · 인요한 · 김예지

이인선 · 김민전 · 조정훈

진종오 · 서천호 · 박성민

박성훈 • 이종배 • 김장겸

유용원 의원(2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외환의 죄(外患의罪)는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행위를 '간첩행위' 및 '군사상의 기밀 누설'로만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미국·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여 중형에 처하고 있으며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. 또한, 현행법은 간첩의 행위 유형을 국가기밀의 탐지·수집 및 누설에 한정하기 때문에행위의 객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 또는 외국단체의정보 수집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고 국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점

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. 최근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국가기밀 탐지·수집 등 탈취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·외교 현안에 영향력 등을 행사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.

이에 현시대를 반영하여 외국에 의한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외국의 간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(안 제98조의2 신설 및 제98조, 제102조, 제104조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제1항 중 "間諜하거나"를 "국가기밀을 수집·탐지·보관·누설·전달·중개(이하 "간첩"이라 한다)하거나"로 한다.

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8조의2(외국 등에 의한 안보위협) ① 외국, 외국단체 및 그에 준하는 단체(이하 "외국등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자이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자(이하 "안보위험인물"이라한다)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연히 유포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이 처한다.
 - ② 안보위험인물로서 국가기밀(비공지성 및 실질비성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)을 탐지·수집·누설·전달·중개하는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③ 안보위험인물로서 정부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 - ④ 안보위험인물이 자국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

기간 중 장기(長期)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제10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第98條(間諜) ① 敵國을 爲하여 第98條(間諜) ① ----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-국가기밀을 수집・탐지・보관 ·누설·전달·중개(이하 "간 助한 者는 死刑, 無期 또는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. 첩"이라 한다)하거나---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98조의2(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) ① 외국, 외국단체 및 그 에 준하는 단체(이하 "외국등" 이라 한다)에 소속된 자이거나 외국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 에 상응한 대가를 받은 자(이 하 "안보위험인물"이라 한다)가 허위의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 를 공연히 유포한 경우 3년 이 상의 징역이 처한다. ② 안보위험인물로서 국가기밀 (비공지성 및 실질비성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)을 탐지 • 수집 ・누설・전달・중개하는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③ 안보위험인물로서 정부정책 第102條(準敵國) (생 략)

<신 설>

第104條(同盟國)(생략)

<신 설>

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.

④ 안보위험인물이 자국 또는 외국의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과를 발 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항에 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(長 期)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
- 第102條(準敵國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 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第104條(同盟國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- ② 제1항에 대하여 제98조의2 의 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